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배경훈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현행 결과(목표달성도)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를 과정의 성실성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평가등급 폐지 등 제도 개편 및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부담 경감 및 핵심 주체의 실질적 보상 강화를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평가등급 폐지에 따라 ‘등급분류’ 규정 삭제 및 과제중단 기준 변경
(제16조제2항 개정, 제17조제1항 신설, 제17조제2항제1호 개정)
- 나. 기초연구 등 소액과제 평가 간소화 근거 마련(제16조제3항제4호 신설)
- 다. 특별평가 강화 근거 마련(제31조제2항 신설)
- 라. ‘선정평가 결과 신속통보’ 근거 마련(제29조제3항 신설)
- 마. ‘이의신청 위원회 구성’ 근거 마련(제30조제2항·3항 신설)
- 바. 대국민 접근 제고를 위한 저장소 기탁 대상을 ‘논문’으로 지정(제35조제6항 신설)
- 사. ‘비영리기관 기술료 사용 기준 자율성 강화’(제41조제3항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 본문 중 “의 결과를”를 “는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”로, “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”를 “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중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주제를 제안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학회발표 등을 통해 최종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

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의 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후속과제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연구개발과제의 성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
2. 연구개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수행과정이 당해 연구개발 과제 및 관련 분야 등에 의미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7조제2항(중전의 제1항)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통상의 연구개발 과정에 비추어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

제28조제1항 중 “고려해야”를 “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여야”로 한다.

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무를 관장할 위원회(이하 본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-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여야 한다.

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“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국회, 감사원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간되는 보고서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예산 낭비 등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경우
2. 예산 및 사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유사사업 대비 현저히 사업추진에 대한 지연이 예견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
3.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통상의 연구개발 과정에 비추어 매우 부적절한 경우

제35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법 제17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”란 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를 말한다.

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저장소 및 제6항의 기탁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.

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항 및 제3항에서”를 “항에서 부터 제4항까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제1호 및 제3호”를 “제2항제1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18조제5항제1호의 용도 :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70 이상
2. 법 제18조제5항제2호의 용도 와 기술이전 · 사업화, 지식재산권의 출원 · 등록 · 유지, 기관 운영경비 등 : 제1호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(다만, 100분의 15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)

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제2항제2호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5조 제6항 및 제7항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하고, 제41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)	제16조(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또는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최종평가(이하 “최종평가”라 한다)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. 다만,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극히 불량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으로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의 결과를 평가하도록 분류해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는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----- --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. <u><단서 삭제></u>
③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“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 과제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

제17조(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) <신 설>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.	<u>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중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주제를 제안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학회발표 등을 통해 최종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</u> 제17조(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) ① <u>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의 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후속과제를 지원할 수 있다.</u> 1. <u>연구개발과제의 성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</u> 2. <u>연구개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수행과정이 당해 연구개발 과제 및 관련 분야 등에 의미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

1. <u>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</u> 2. (생략) <u>② ~ ④</u> (생략) 제28조(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·특성 및 규모 등을 <u>고려해야</u> 한다. ② ~ ⑤ (생략) 제29조(평가 결과의 통보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 제30조(이의신청) (생략) <u><신설></u>	1. <u>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통상의 연구개발 과정에 비추어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</u> 2. (현행과 같음) <u>③ ~ ⑤</u> (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) 제28조(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여야</u> -----.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제29조(평가 결과의 통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</u> 제30조(이의신청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<u>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무를</u>
---	--

<신 설>

제31조(특별평가의 실시 등) ①
(생 략)

<신 설>

② · ③ (생 략)

관장할 위원회(이하 본조에서
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
하여야 한다.
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부전
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위원회
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결과에
대한 신뢰성을 담보하여야 한
다.

제31조(특별평가의 실시 등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
“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
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국회, 감사원 등 공신력 있는
외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
간되는 보고서를 통해 연구개
발과제의 예산 낭비 등에 대
한 지적이 있는 경우

2. 예산 및 사업분야 등을 고려
하여 유사사업 대비 현저히
사업추진에 대한 지연이 예견
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

3.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
통상의 연구개발 과정에 비추
어 매우 부적절한 경우

③ · 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

제35조(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)

① ~ ⑤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제41조(기술료의 사용) ① (생략)

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(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)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“정부지분기술료”라 한다)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.

1.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
자에 대한 보상금: 정부지분기

같음)

제35조(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)

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법 제17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”란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를 말한다.

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저장소 및 제6항의 기탁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.

제41조(기술료의 사용) ① (현행
과 같음)

[illegible]

1. 법 제18조제5항제1호의 용도
: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7

<u>술료의 100분의 60 이상</u> 2. <u>기술이전·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·유지: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</u> 3. <u>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: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</u> 4. <u>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: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</u> ③ <u>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.</u> <u><신 설></u> ④ (생 략)	<u>0 이상</u> 2. <u>법 제18조제5항제2호의 용도와 기술이전·사업화, 지식재산권의 출원·등록·유지, 기관운영경비 등 : 제1호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(다만, 100분의 15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)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③ ----- -- <u>제2항제1호</u>----- ----- ---. ④ <u>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제2항제2호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</u> 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	
연구평가혁신과	
연 락 처	(044) 202 - 6921
	(044) 202 - 6934